

#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

❖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

## □ 관련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## □ 시행년도 : 2001년도

## □ 추진계획

○ 사업기간 : 2026. 1. 1. ~ 12. 31.

○ 지원대상

- 투석일 · 이식수술 사전검사일 · 투석 혈관 수술일 당시 도내에 계속적으로 6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
  - **혈관 및 복막 투석비 : 투석 받고 있는 자(도내의료기관에 한정)**
  -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: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
  - 투석 혈관수술비 :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

※ 제외대상 :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,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

○ 2026년도 예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| 계         | 제주시       | 서귀포시   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|
| 1,403,000 | 1,035,000 | 368,000 |    |

○ 지원기준

- **혈관 및 복막 투석비 :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% 지원**

※ 단,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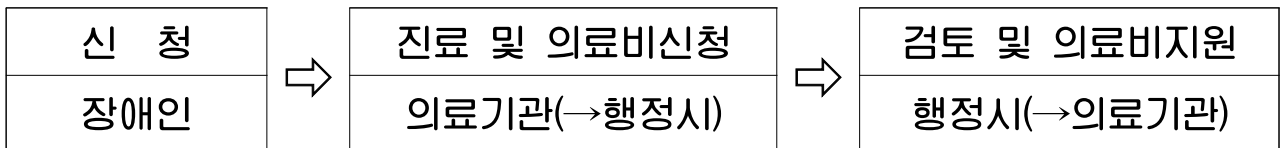
-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: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(연1회에 한함)
- 투석 혈관수술비 :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 (연1회에 한함)

- ※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(별지6호서식)의 급여비용중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에 따른 모든 비용지원(전액본인부담액 제외)  
**단,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 혈관 및 복막 투석비, 이식수술 사전검사비, 투석 혈관 수술비 상세내역 확인 후 지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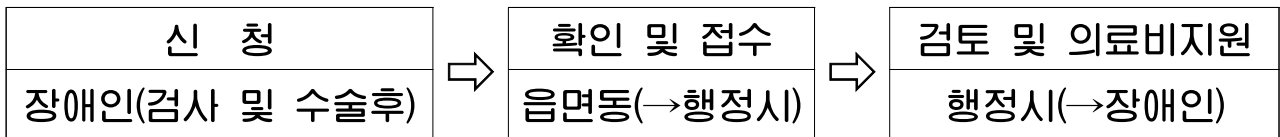
## □ 지급절차 및 구비서류

### ○ 지급절차

- 혈관 및 복막 투석비



-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



### ○ 구비서류

- 혈관 및 복막 투석비

(장애인 → 의료기관) · 장애인등록증

(의료기관 → 행정시)

- 신장장애인의료비 청구서[서식8]
-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
-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[서식9]

-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

(장애인 → 읍면동)

- 장애인등록증 및 신분증
- 신장장애인 이식수술 사전검사비/투석 혈관 수술비 지원신청서[서식10]
-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(의료기관 발급)
- 진료비 세부산정내역(의료기관 발급)
- 장애인 본인 통장 사본

※ 필수 확인사항

(의료기관)
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신장장애인 여부
- 타 법 지원자 중복 여부

(읍면동)

- 장애등록 및 도내 거주 6월 이상인 자
-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등

○ 청구기한 : 투석, 이식검사 또는 혈관수술을 행한 해당연도

\* 도 시책사업 관련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따른다.

□ 보고사항

○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철저